

2017년도 신규간호사 모집요강

우리의료원은 서북권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 능동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진 인재를 가족으로 모시고자 합니다.

2016년 9월 1일

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

1. 모 집인원 및 응시자격

모집부분	모집인원	근무부서	비 고
신 규 간호사	00명	간 호 과 ^(참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3교대 근무 가능자 (근무배치부서에 따라 3교대 근무는 변경될 수 있음) ◦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

※(참고1) 간호과 : 일반병동, 응급실, 중환자실, 수술실, 노인병동,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병동

2. 채용자격 기준 및 업무

채 용 자 격 기 준	주 요 업 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17년 간호(학)과 졸업예정자 ◦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◦ 본원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. ◦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취업제한이 되지 않은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간호업무 전반

3. 전형방법

: 1차 서류전형 ⇨ 2차 면접전형 ⇨ 3차 신체검사 ⇨ 최종 합격자 선정

※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

※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실시

4.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

- 가. 접수기간 : 2016년 9월 1일(목)부터 ~ 2016년 10월 7일(금)까지
- 나. 접수장소 :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총무과(충남 서산시 중앙로 149)
- 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
 - ※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총무과로 등기 우송(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- 라. 충청남도서산의료원 홈페이지 (<http://www.seosanmc.or.kr>) 해당 채용 공고 (서산의료원 공고 제2016-127호)에서 입사지원서 다운

5. 면접 및 합격자 통보 일정

- 가. 서류전형 : 서류접수 시
- 나. 면접전형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- 다. 최종 합격자 발표 :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 - ☞ 충청남도서산의료원 홈페이지(<http://www.seosanmc.or.kr>)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유선으로 개별 통지합니다.
 - ☞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(국·공립병원) 판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
6. 제출서류

- 가. 응시원서(본원 소정양식) 1부.
(<http://seosanmc.or.kr> → 알림마당 → 해당채용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)
- 나.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.
 - ⇒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
 - ⇒ 4년제 : 3학년2학기, 3년제 : 2학년2학기까지 평점평균, 전체석차기재
- 다. 주민등록등본 1부
- 라. 기본증명서 1부.
- 마. 졸업예정증명서 1부.
- 바. 경력증명서 1부.<해당자에 한함>
- 사. 장애인수첩(복지카드)·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사본<해당자에 한함>

7. 기타사항

- 가.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나.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다. 차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라. 전형일정은 본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.
- 마.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바.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부여
- 사. 보수는 서산의료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합니다.
- 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총무과(041-689-7404), 간호과(041-689-710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8. 인사규정 제18조(결격사유)

제18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<개정 2014. 1. 10>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8.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